

#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이하 “주관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명칭, 계약학과 유형, 학위종류, 학생정원, 학생모집 시기, 학점, 학습구분,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계약학과 명칭    | 유형    | 학위 | 학생정원 | 모집시기 | 학기/이수학점  | 학습구분  | 운영 기간              |
|------------|-------|----|------|------|----------|-------|--------------------|
| 웰니스바이오산업학과 | 채용조건형 | 석사 | 10명  | 봄 학기 | 4학기/24학점 | 평일 주간 | 2022.3.1~2025.2.28 |
| 의료기기융복합학과  | 채용조건형 | 석사 | 10명  | 봄 학기 | 4학기/24학점 | 평일 주간 | 2022.3.1~2025.2.28 |

**제3조(학칙)** 주관대학의 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8조를 준수하여 계약학과에 관련된 규정을 학칙에 규정해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 그리고 참여 기업 대표와 협의에 의하여 편성하되, 운영지침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현장실습, 원격 등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주관대학의 장의 학사관리에 의하되, 주말, 야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주관대학의 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른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 선발)**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를 자격심사 후 입학을 허가하되,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학생 및 기업을 선발해야 한다.

**제9조(학생 관리)**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 제20조에 따라 학생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만약 학생관리가 부적절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관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주관대학의 장은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제13조에서 정하는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대학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주관대학의 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지해야할 경우,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해당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해당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제13조(협약 및 관련규정 위반 등) ① 주관대학의 장은 본 협약뿐만 아니라 운영지침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대학의 장이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관대학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의 정당한 조치사항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특수조건)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지침,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은 본 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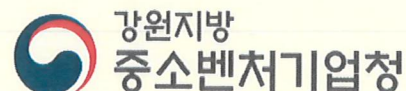
제16조(협약의 효력)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21년 11월 17일



총 장 반 선 섭

반 선 섭



청 장 이 상 천

이 상 천